



6	보도 자료					N 1 6 1/1
금융위원회	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기	능	배포	2017.2.28(화) 증선위(15:00) 의결 후	了。 对象沿军 ^{处,为}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유 재 훈(02-2100-2601)		담당자		윤 송 이 사무관 (02-2100-2517)	
	금감원 기업공시국장 김 도 인(02-3145-8100)				정 준 아 팀장 (02-3145-8470)	

제 목 :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

- □ 중권선물위원회는 2017. 2. 28. 제4차 정례회의에서
 - 비상장법인 ㈜**멈스** 및 **매출인 1인**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**과징금·과태료 부과**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
- □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**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** 및 **투자자**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
 - < 붙임 > 위반자별 위법사실
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600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http://www.cybercop.or.kr) 접속
 - 전화: 1332 또는 02-3145-5583, 5599, 5568, 5593
 - 팩스: 02-3145-5544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〈붙임〉

위반자별 위법사실

위반자	위반내용	조치
㈜멈스	- 소액공모공시서류(모집) 제출의무 위반 - 증권신고서(모집) 제출의무 위반 -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	- 과태료 39,700,000원 - 중권발행제한 12월
OOO (매출인)	- 증권신고서(매출)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346,300,000원

- □ ㈜멈스는 2014. 8. 22. 과거 6개월 이내 54인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3.5억원을 모집하였고, 2014. 10. 17. ~ 2015. 4. 9. 기간 중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12회 실시하였음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(13회)를 미제출 하였으며,
 - 2015. 2. 6. ~ 2016. 2. 4. 기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7회 실시함에 있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(7회)를 미제출 하였고,
 - OOO이 2015. 3. 20. ~ 2016. 10. 31. 기간 중 526인을 대상으로 ㈜멈스 보통주를 287억원에 매출하였음에도 회사는 증권신고서(9회)를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